

#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2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사회투자기금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기금의 2022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이 변경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 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, '22년도 수입계획 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5,534백만원에서 27,206백만원으로 21,672백만원 증가하였고,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 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3,550백만원에서 24,722백만원으로 21,172백만원 증가하였음.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〈수입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증감 (A-C)
계	16,610	16,610	38,282	21,672
융자금회수	10,915	10,915	10,915	-
이자수입	61	61	61	-
기타수입	100	100	100	-
예치금회수	5,534	5,534	27,206	21,672

### 〈지출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증감 (A-C)
계	16,610	16,610	38,282	21,672
융자성사업비	12,000	12,000	12,000	-
비용자성사업비	1,040	1,540	1,540	500*
기본경비	20	20	20	-
예치금	3,550	3,050	24,722	21,172

\*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('22.3.3.)을 통해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편성으로 비용자사업비 既 증액

- 수입계획 : 16,610백만원 → 38,282백만원(21,672백만원)
  - 예치금 회수 : 5,534백만원 → 27,206백만원 (증 21,672백만원)
- 지출계획 : 16,610백만원 → 38,282백만원(21,672백만원)
  - 비용자사업비 : 1,050백만원 → 1,550백만원 (증 500백만원) ※ 1차 변경 내역(22.3.3.)
  - 예치금 : 3,550백만원 → 24,722백만원 (증 21,172백만원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기금운용계획 변경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김나영 (☎ 2133-5477)